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2. 21.(월) 14:4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4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대상 심사가 종료됨에 따라 허가 심사의 공정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대상 법인 선정에 관한 건 (2022-07-018)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법인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도로교통공단)를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경과 사항은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신청 공고를 하였고, 11월 12일 허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2022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 허가 신청 사업자 현황입니다. 7개 사업자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신청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시청자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10인을 외부 추천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11인 구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입니다. 운영은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7개 신청 사업자 중 도로교통공단이 총점 787.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허가 신청 사업자별로는 (주)경인방송이 총점 1,000점 만점 중 738.76점, 경기도 759.88점, 도로교통공단 787.01점, 오비에스경인TV(주) 784.15점, (주)케이방송 686.15점, (주)뉴경기방송 709.15점, 경기도민방송(주)이 691.01점입니다. 전체 총점 대비 허가 최저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신청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신청 사업자들의 장·단점, 현재의 시장 상황, 경기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신청 사업자 모두 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 의욕이 크고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방송의 독립성 우려가, 민영방송 사업자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적 투자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라디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장치 마련이 미비하며,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이 도로교통법상 해당 사업자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라디오 방송 환경 악화를 타개할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규사업자에게 라디오 시장의 발전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허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7개 신청 사업자에 대해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기준, 방송구역, 혼신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7개 모두 방송국 기술심사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9> 청취자 의견 반영 여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사업자 관련 사항을 공고한 결과, 총 324건의 청취자 의견을 접수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324건을 청취자 의견으로 채택하고 그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10>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제123조(사업)상 사업목적인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 제5조(사업)상 사업범위인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벗어나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심사의견위원회 의견에 따라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으로 신청 사업자별 심사 결과,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전파법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가 경기방송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본적인 정책목표가 그동안 경기방송이 종합편성으로 라디오방송을 했으니까 종합편성 라디오방송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미 밝혀진 사항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도로교통공단은 정관상 종합편성을 할 수 없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논란이 되겠지요. 제 생각에 점수는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각각 낸 점수를 합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것은 맞지만 정관상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방통위가 그런 사업자에게 점수가 높다고 해서 허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일단 저는 이 문제는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종합편성을 하기 어려운 점들을 잘 지적해 놓고 심사의견에도 그런 것이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는데 부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기본방향을 보니까 선정 여부나 선정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점수는 제일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법적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저도 김효재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우리가 처음부터 이 공모에 종합편성을 전제로 한 공고를 한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안형환 부위원장

-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앞으로 법률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 도로교통법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정관에 따르면 종합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다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면밀한 법적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법상 공모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오늘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물론 방송법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 같은 방송에 대한 허가·승인의 경우에 충돌되는 법안이 있다면 이것은 절차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도로교통법상 종합편성채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기존에 TBN이 12개소에서 교통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TBN 한국교통방송이 하고 있는 방송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서 도로교통공단이 신청한 점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다른 법과 충돌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지금 당장 의결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를 낼 때 방송법 3개 조항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표하였고, 그 공고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응모를 했고 심사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 중에서 심사위원 분들 중 일부가 도로교통법상 종합편성채널을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으나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할 재량권이 없고 그 부분은 결국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심사위원회의 채점 점수는 존중하되, 과연 도로교통공단이 저희가 애초에 내걸었던 보도를 포함하는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재차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53분 폐회 】